

토론회 자료집

내란 종식, 어디까지 왔나?

사법·입법·행정부의 대응 및 평가,
향후과제

일시 | 2026년 7월 9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주관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목차

목차	3
프로그램	4
인 사	5
내란 수사와 재판, 내란 종식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 박용대	7
내란 종식을 위한 입법·행정 조치의 평가와 향후 과제 / 유승익	33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 처벌을 넘어 기억으로 / 서복경	45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 토론문 / 윤태범	49
내란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제언 / 임태훈	51
전쟁책동, 군을 동원한 계엄을 막기 위해, 일반이적죄 확실한 단죄가 필요하다 / 주제준	65

프로그램

- 13:30 사 회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13:35 인 사 박석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13:40 발표1 내란 수사와 재판, 내란 종식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박용대 민변 12·3내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TF 단장
- 14:05 발표2 내란 종식을 위한 입법·행정 조치의 평가와 향후 과제
 - 헌법존중 정부혁신TF의 활동을 중심으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14:30 지정토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주제준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간사
 (가나다라 순)
- 15:10 종합토론
- 15:30 폐회

박석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윤석열 일당에 의한 내란발생이 벌써 1년7개월이 넘었고, 윤석열 파면이 확정된 지도 벌써 1년3개월이 넘었지만, “내란종식”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은 2시간 반만에 해제되었지만, 빛의광장 시민항쟁을 통해 내란 이후 만 6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내란 특검이 2차례나 추진되었고 내란 재판도 상당 수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오늘 이 토론회가 시의적절하다는 느낌과 함께, 아직도 내란이 제대로 종식되지 않았다는 역사적 자각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내란 재판의 경우, 새로운 특검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2차특검의 기간연장 등의 조치는 적극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의 2번째 발제 내용인 “내란 종식을 위한 입법·행정 조치”에 관해서는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헌법준중·정부혁신 TF가 지난 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3개월간 활동하였다지만, 내란 종식의 핵심 주체인 광장시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채, 지극히 관료적 절차로 시종일관하였던 수준이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형식으로 시민사회·원내정당·정부간 공동거버넌스 기구로 설치된 사회대개혁위원회와도 일체의 소통이나 협력함이 없이 진행되었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검찰과 사법부의 내란 관련 동조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는 요원하기만 한 실정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실상 합작에 의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위법부당한 석방조치와, 또한 조희대 대법원에 의한 위법부당한 대선개입과 내란에의 사실상의 동조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제대로 된 내란종식을 위해 마땅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인 내란종식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먼저 노골적인 내란 선전·선동을 자행하였던 윤석열 일당의 ‘변호사’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응징이 필요하고 또한 이들의 내란 선전·선동 행위를 생방송으로 중계하여 내란 선전·선동행위의 공범이 된 방송사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문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내란 선전·선동에 나섰던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손현보(세계로교회) 등 극우 개신교 세력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여러 가지로 위태위태한 상황이 연속되고 있는 바, 제대로

응당한 응징이 되도록 감시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과제입니다. 특히 전한길과 스카이데일리 일당 등 가짜뉴스를 조작해 내며 부정선거론을 퍼트리고 있는 일당의 세력과 미국극우파들과 연계하여 “STOP THE STEAL”이라는 미국식 구호를 외치며 내란 선전·선동한 일당 들에 대한 합당한 응징 또한 놓칠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한편, 형사처벌 방식만으로는 그물코가 너무 넓고 성거서, 응당한 책임추궁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1대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5.5.9. 광장대선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및 진보개혁 4당이 함께 발표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선언문”에서 합의했던 바와 같이, 가칭 “반헌법행위자조사특별법”을 제정하여 추가적인 내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재발방지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든, 발제2의 내용처럼 특별법으로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응당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렇게 설치되는 특별조사위에서는 수사권에 준하는 강제 조사권이 실효성 있게 확보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수고해 주신 2분의 발제자 분들과 4분의 토론자 분들,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란 수사와 재판, 내란 종식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 단장

1. 들어가며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이 지났다. 우리는 그동안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과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윤석열 일당의 폭거를 온 힘을 다해서 막았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고, 선거로 정권을 교체시켰다. 그들이 범한 무도한 범행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고자 특별검사를 출범시켰고, 늦었지만 내란전담재판부도 만들었다.

우리는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내란을 종식시켰을까, 또는 내란을 종식시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들이 일으킨 내란과 외환의 전모에 정확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일까. 내란의 부화수행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던 자들을 모두 찾아서 단죄하고 있는 중일까. 그렇지 않으면 그들 중 상당 수는 발각되지 않은 채 숨어서 반동의 기회를 엿보는데,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 채 지나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들이 한 모든 범죄행위의 퍼즐들을 잘 맞추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으면 빙산의 일각만 찾아 그에 대한 단죄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일까. 12·3 내란 사태를 교훈삼아 다시는 이 땅에 헌정질서 파괴행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허술한 제도를 고쳐서 더 단단히 만들고 있는 것인가.

시민사회는 내란이 발발했을 때부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쳤다. 그리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정확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도 개혁이라는 전 과정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 왔다. 그것은 우리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교훈이기 때문이다.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의미를 지닌 내란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현황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지금 내란 종식이라는 목표에 잘 다가가고 있는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를 해소할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봤으면 한다.

2. 내란 수사 현황

가. 1차 내란 특검이 출발하기 전

소위 내란 특검으로 불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때는 **2025. 6. 12.**이다.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더 지났을 때다. 그나마 이재명 정권으로 교체가 있고서야 특검이 출범할 수 있었다.

특검이 출범하기 전 수사는 ① 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의 협의체인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와 ② 검찰의 ‘**12·3**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맡고 있었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협력했다. 양 기관 모두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서 해당 사건을 특검에 인계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공조수사본부는 그 기간 동안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하고 그들을 구속시켰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는 **2024. 12. 27.**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그것이 내란 사태 후 처음으로 내란 혐의자에 대한 기소였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25. 1. 3.** 박안수, 곽중근을, **1. 26.** 윤석열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그리고 군, 경 책임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하였다. 지귀연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관련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날’이라는 규정을 ‘시간’으로 독단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지금까지 법원이 해 왔던 판단과 전혀 다른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그런데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의무가 있는 검찰은 지귀연 재판부의 위법한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 내란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매우 분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나. 1차 내란 특검의 출범과 수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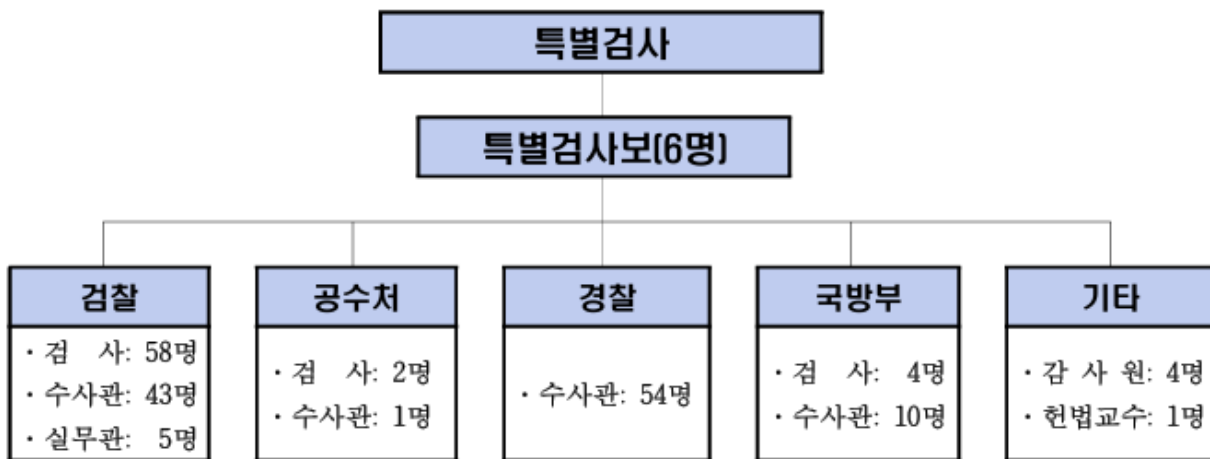
내란 특검은 **2025. 6. 12.** 조은석 특검이 임명되면서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1차 내란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지 **22일** 만에 윤석열을 재구속하는데 성공했다. 재판부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124일**만이었다.

아직 2차 종합특검이 수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어서 내란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가 발생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2차 종합특검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1차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특검 수사 인력

조은석 특별검사, 6명의 특별검사보, 검찰, 공수처, 경찰 국방부, 감사원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182명의 인원, 특별수사관, 행정지원요원으로 49명을 추가 채용함으로써 내란 특검의 가용 인원은 총 238명이었다.

<특검 팀 구성 관련 검찰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인원 현황>



* 출처: 특별검사 수사결과 발표 자료

2) 접수된 사건 및 처리된 사건의 수

조은석 특검이 발표한 수사결과 자료에 의하면 내란 특검이 수사한 기간 동안 모두 249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

이첩받은 사건은 164건으로, 검찰로부터 38건, 공수처 71건, 경찰 33건 국방부 22건 등이었다. 그리고 특검에 접수된 고소, 고발 사건이 45건, 특검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 40건이었다.

위 접수된 사건 중 특검이 수사 기간 내에 처리한 사건은 215건, 처리하지 못하여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한 사건은 34건이다. 위 34건에는 심우정 고발사건 10건 등 1인에 대한 동일 내용이 다수 사건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1차 내란 특검은 특검에 접수된 거의 모든 사건을 수사 기간 내에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3) 공소제기한 사건 내역

특검이 출범하기 전 검찰 등이 기소한 사건까지 포함해서 내란 사건 등과 관련하여 기소된 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연번	성명	직책	죄명	공소제기	기소기관
1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25. 1. 26.	검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5. 7. 21.	특검
			일반이적 등	25. 11. 10.	특검
			위증	25. 12. 5.	특검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

연번	성명	직책	죄명	공소제기	기소기관
1	한덕수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25. 8. 29.	특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5. 12. 12.	특검
2	조태용	국정원장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25. 11. 28.	특검
3	최상목	기재부장관	위증 등	25. 12. 12.	특검
4.	김용현	국방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4. 12. 27.	검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5. 6. 19.	특검
			일반이적 등	25. 11. 10.	특검
			군기누설 등	25. 12. 15.	특검
5	이상민	행안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5. 8. 19.	특검
6	박성재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5. 12. 11.	특검
7	이완규	법제처장	국회증언등감정법위반	25. 12. 11.	특검
8	이은우	KTV 원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5. 12. 5.	특검

<대통령실 관계자>

연번	성명	직책	죄명	공소제기	기소 기관
1	정진석	비서실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5. 12. 12.	특검
2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5. 12. 12.	특검
3	윤재순	총무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5. 12. 9.	특검
4	강의구	부속실장	허위공문서작성 등	25. 12. 5.	특검
5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5. 12. 12.	특검
6	박종준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5. 12. 5.	특검
			증거인멸	25. 12. 10.	특검
7	김성훈	경호처 차장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5. 12. 5.	특검
8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5. 12. 5.	특검
9	김신	경호처 가족경호부장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25. 12. 5.	특검

<군 관계자>

연번	성명	직책	죄명	공소제기	기소기관
1	여인형	방첩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4. 12. 31.	군검찰
			위증	25. 6. 23.	군검찰
			일반이적 등	25. 11. 10.	특검
2	곽종근	특전사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5. 1. 3.	군검찰
3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4. 12. 31.	군검찰
4	문상호	정보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5. 1. 6.	군검찰
			군기누설 등	25. 6. 23.	군검찰
5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5. 1. 10.	검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25. 6. 27.	특검
6	김용군	전 국방조사본부 수사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5. 1. 15.	군검찰
7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5. 11. 10.	특검
8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	군기누설 등	25. 6. 23.	군검찰
9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	군기누설 등	25. 6. 23.	군검찰
10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25. 2. 28.	군검찰

11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25. 2. 28.	군검찰
12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내란중요임무종사	25. 2. 28.	군검찰
13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내란중요임무종사	25. 2. 28.	군검찰
14	김대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내란중요임무종사	25. 2. 28.	군검찰
15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내란중요임무종사	25. 1. 3.	군검찰

<경찰 관계자>

연번	성명	직책	죄명	공소제기	기소기관
1	조지호	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5. 1. 8.	검찰
2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5. 1. 8.	검찰
3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5. 1. 26.	검찰
4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5. 1. 26.	검찰

<정치인>

연번	성명	직책	죄명	공소제기	기소기관
1	추경호	국회의원	내란중요임무종사	25. 12. 7.	특검
2	임종득	국회의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25. 12. 9.	특검
3	황교안	전 국무총리	내란선동 등	25. 12. 4.	특검

3. 내란 재판 현황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소된 내란 사건 등의 재판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단까지 모두 마쳐 확정된 사건은 노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이 유일하다. 2026. 6. 30. 현재 ① 윤석열 등의 체포방해사건, ② 한덕수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③ 이상민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등 3건만이 항소심까지 모두 마쳤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 외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1심 또는 2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공소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사건의 형사재판 현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대통령 관련 재판

연번	성명	죄명	선고형	선고일	재판부
1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무기징역	26. 2. 19.	제25형사부 2025고합129
			2심	진행 중	서울고등 제12-1 형사부 2026노648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5년	26. 1. 16.	제35형사부 025고합1010
			징역 7년	26. 4. 29.	서울고등 제1형사부 2026노212
			3심	진행 중	대법원 제3부 2026도6500
		일반이적 등	징역 30년	26. 6. 12.	제36형사부 025고합1511
			2심	진행 중	서울고등 제1형사부 2026노1560
		위증	무죄	26. 5. 28.	제32형사부 2025고합1636
			2심	진행 중	서울고등 제1형사부 2026노1440

* 노란 색 표시는 내란전담재판부

나. 국무위원 등 정부 관계자 관련 재판

연번	성명	죄명	선고형	선고일	지판부
1	한덕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징역 23년	26. 1. 21.	제33형사부 2025고합1219
			징역 15년	26. 5. 7.	서울고등 제12-1형사부 2026노253
			3심	진행 중	대법원 제2부 2026도734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진행 중	제33형사부 2025고합1678
2	조태용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징역 1년 6월	26. 5. 21.	제32형사부 2025고합1613
			2심	진행 중	서울고등 제1형사부 2026노1352
3	최상목	위증 등	1심	진행 중	제33형사부 2025고합1678
4.	김용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징역 30년	26. 2. 19.	제25형사부 2025고합129

			2심	진행 중	서울고등 제12-1 형사부 2026노648
			징역 3년	26. 5. 19.	제34형사부 2025고합832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2심	진행 중	서울고등 제12-2형사부 2026노1317
		일반이적 등	징역 30년	26. 6. 12.	제36형사부 2025고합1511
			2심	진행 중	서울고등 제1형사부 2026노1560
		군기누설 등	징역 3년	26. 6. 19.	제21형사부 2025고합1683
			2심	진행 중	서울고등 제12-3 형사부 2026노1630
5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징역 7년	26. 2. 12.	제32형사부 2025고합1172
			징역 9년	26. 5. 12.	서울고등 제1형사부 2026노509
			3심	진행 중	대법원 제3부 2026도7559
6	박성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징역 25년	26. 6. 22.	제33형사부 2025고합1670
			쌍방	항소장 제출	
7	이완규	국회증언등감정법위 반	공소기각	26. 6. 22.	제33형사부 2025고합1670
			쌍방	항소장 제출	
8	이은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	징역 1년 집유 2년	26. 6. 26.	제23형사부 2025고합1635

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재판

연번	성명	죄명	선고형	선고일	재판부
1	정진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	1심	진행 중	제33형사부 2025고합1678
2	김주현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	1심	진행 중	제33형사부 2025고합1678
3	이원모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	1심	진행 중.	제33형사부 2025고합1678
4	윤재순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	1심	진행 중	제23형사부 2025고합1653

5	임종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안보실2차장	1심	진행 중	제23형사부 2025고합1653
6	강의구	허위공문서 작성 등	징역 1년 6월	26. 5. 28.	제30형사부 2025고합1637
			2심	진행 중	서울고등 제12-3형사부 2026노1433
7	박종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진행 중 26. 7. 9. 선고 예정	제26형사부 2025고합1634
		증거인멸	무죄	26. 5. 21.	제32형사부 2025고합1657
			2심	진행 중	서울고등 제12-2 형사부 2026노1362
8	김성훈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진행 중 26. 7. 9. 선고 예정	제26형사부 2025고합1634
9	이광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진행 중 26. 7. 9. 선고 예정	제26형사부 2025고합1634
10	김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1심	진행 중 26. 7. 9. 선고 예정	제26형사부 2025고합1634

라. 군 관계자에 대한 재판

연번	성명	죄명	선고형	선고일	재판부
1	여인형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1심	진행 중	제26형사부 2025고합1764
		위증	1심	진행 중	제26형사부
		일반이적 등	징역 15년	26. 6. 12.	제36형사부 2025고합1511
			2심	진행 중	서울고등 제1형사부 2026노1560
2	곽종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1심	진행 중	제26형사부 2025고합1764
3	이진우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1심	진행 중	제26형사부 2025고합1764
4	문상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1심	진행 중	제26형사부 2025고합1764
		군기누설 등	징역 2년 법정구속	26. 6. 26.	제26형사부 2026고합12

5	노상원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징역 18년	26. 2. 19.	제25형사부 2025고합129
			2심	진행 중	서울고등 제12-1 형사부 2026노64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징역 2년	25. 12. 15.	제21형사부 2025고합901
			향소 기각	26. 2. 12.	서울고등 제3형사부 2025노3719
			상고 기각 (확정)	26. 5. 12.	대법원 2026도3517
6	박안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1심	진행 중	제26형사부 2025고합176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심	진행 중	제26형사부 2025고합1766
7	김용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무죄	26. 2. 19.	제25형사부 2025고합129
			2심	진행 중	서울고등 제12-1 형사부 2026노648
8	김용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징역 3년 집행유예5년	26. 6. 12.	제36형사부 2025고합1511
			2심	진행 중	서울고등 제1형사부 2026노1560
9	김봉규	군기누설 등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26. 6. 26.	제26형사부 2026고합12
10	정성욱	군기누설 등	징역 1년 법정구속	26. 6. 26.	제26형사부 2026고합12

마. 경찰 관계자에 대한 재판

연번	성명	죄명	선고형	선고일	재판부
1	조지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징역 12년	26. 2. 19.	제25형사부 2025고합129
			2심	진행 중	서울고등 제12-1 형사부 2026노648
2	김봉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징역 10년	26. 2. 19.	제25형사부 2025고합129
			2심	진행 중	서울고등 제12-1 형사부 2026노648
3	윤승영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무죄	26. 2. 19.	제25형사부 2025고합129
			2심	진행 중	서울고등 제12-1 형사부 2026노648
4	목현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징역 3년	26. 2. 19.	제25형사부 2025고합129
			2심	진행 중	서울고등 제12-1 형사부

					2026노648
--	--	--	--	--	----------

바. 정치인에 대한 재판

연번	성명	죄명	선고	선고일	재판부
1	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1심	진행 중	제34형사부 2025고합1641
2	임종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심	진행 중	제23형사부 2025고합1653
3	황교안	내란선동 등	1심	진행 중	제35형사부

사.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연번	성명	죄명	사건명	결정일	재판부
1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구속취소	25. 3. 7.	제25형사부

4. 내란 관련 수사에 대한 평가

가. 내란 사건에 대한 평가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의 현황과 경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위해서는 윤석열 일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의 본질과 성격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내란 사건을 단순히 일반 형사범죄로 볼 것이냐, 또는 희생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경고성 계엄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로 볼 것이냐에 따라 평가의 기준과 정도는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12·3 내란 사태의 성격에 대한 평가는 이미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내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는 피고인 한덕수와 박성재에 대한 재판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및 일반이적죄를 재판했던 제36형사부의 판단이 시민들로부터 가장 큰 공감을 얻고 있고, 사건 성격에 대해서도 정확한 분석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위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 한 12·3 내란, 외환 사태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제33형사부 판결 중 해당 부분>

12·3 내란 사태는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가 많았다. **12·3** 내란은 바로 이와 같은 성격의 범죄이다.

12·3 내란은 지난 **2025. 1. 19.**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폭력을 함부로 행사하며, 이러한 상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범죄이다.

<제36형사부 판결 해당 부분>

12·3 내란의 범죄자들은 일반이적죄도 범하였는데, 외환의 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법익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범죄의 태양에 따라서는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거나 국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다.

위 재판부의 지적처럼 **12·3** 내란은 권력자에 의한 친위쿠데타였다.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친위쿠데타를 획책한 사건이다. 그 목적은 분명해 보인다.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 그와 같은 무도한 내란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편으로 일반이적죄까지 범했다. 자칫 국지전을 도발하여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 뻔했다. 드론 침투만으로 전쟁이 확대될 수 없고, 대규모의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전쟁은 아주 작고 우연한 사고만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세계의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드론을 북한에 침투시킨 일반이적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범죄였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내란, 외환 사건의 진상규명에 다가서기 위한 질문들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수사는 범행에 대한 처벌의 유무를 파악함과 동시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이다. 우리는 그 사건의 전모와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

1) 윤석열 일당은 내란을 왜 일으켰는가 (내란 범행의 동기)

- 2) 내란 주도세력은 언제부터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했는가. (내란의 결심과 준비 시기)
- 3) 내란을 모의하고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들을 도왔던 협조자는 누구인가.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가.
- 4)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전쟁이나 군사 분쟁을 일으키려 했던 시도들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뤄졌고, 무슨 목적으로 하려고 했으며, 내란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 5) 검찰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검찰을 신뢰했던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검찰을 동원하거나 검찰과 긴밀히 소통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검찰은 언제부터 내란 범행 사실을 알았고, 어느 정도 관여했으며,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검찰청 고위급 검사 2명이 선관위로 출동하려 했다는 제보도 공개되었는데, 검찰에서 누가 누구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검사가 선관위로 가려고 했던 이유와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 6)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은 **2024. 12. 8. 새벽 1시 30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석해서 긴급체포되었는데, 그는 왜 검찰에 자진출석 의사를 밝히고 체포된 것일까. 누군가의 계획과 지시에 의해서 행동했던 것은 아닐까.
- 7)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언제부터 내란 범행을 알았고, 어느 정도 관여되었던 것일까. 구체적으로 누가 관여했고, 무슨 역할을 담당했는가.
- 8) 대통령의 업무를 가장 가까이서 보좌했던 대통령비서실, 안보실 등의 핵심 측근들은 언제 내란 범행을 알았고,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
- 9)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언제 어떤 경위로 내란범행(또는 비상계엄 선포 준비)을 알았고, 어느 정도 관여했으며,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가.
- 10) **12·3** 내란 사태 당시 출동한 병력은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 등이었는데, 그 외 다른 군 기관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언제, 어느 정도로 관여했던 것일까.
- 11) 노상원은 현직 군인도 아닌데, 그는 왜 내란 범행의 중요임무종사자가 된 것일까, 그가 한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했기에 비화폰까지 지급받았던 것일까.
- 12) 노상원 수첩에는 선관위 직원들의 체포, 구금 외에도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서 수거 후 살해하는 내용 등 도저히 혼자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데 누가 그 계획을 함께 수립했던 것일까. 그 수첩의 내용은 누구의 지시를 듣고 받아 쓴 것은 아닐까.
- 13) 포고령은 누가 언제 준비하고, 작성한 것일까.
- 14) 내란의 범행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막아야 하고, 범행 후 정치세력의 지지도 중요하므로 국민의힘 집행부 또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국민의힘 중 누가 그들 일당과 연락했고, 부여받은 임무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

15) 12·3 내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윤석열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렇게 4인은 삼청동 안가에 모였다. 그들은 비상계엄 직후 그 곳에 왜 모였고, 무엇을 논의했던 것일까. 그들 모두가 법률가라는 점에서 당연히 법률적 사항들을 논의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러면 그들은 내란의 시도가 실패한 후 윤석열과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범행 축소 및 은폐를 논의했던 것은 아닐까.

16)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로부터 문건을 받았는데, 그 문건을 받은 후 어떤 조치를 했고, 그가 부여받은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17)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안 가결 후 그들은 2차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전해지는데 누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2차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던 것일까.

다.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과 수사 성과

1) 내란 특검의 노력과 적지 않은 성과

앞서 질문들은 12·3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위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얻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 중 위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얻은 것의 상당 수는 내란 특검이 노력한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차 내란 특검은 제한된 시간과 자원을 이용하여 그 직전까지 미진했던 수사를 극복하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 내란 특검의 주요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꼽을 수 있다.

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재구속

윤석열은 2025. 1. 19. 구속되었다가 2025. 3. 7.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그러다가 내란 특검의 수사와 영장청구를 통해 2025. 7. 10. 재구속되었다. 구속 취소된지 124일만이였다. 내란 우두머리의 거리 활보는 그 자체로 민주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내란이라는 끔찍한 범행을 했는데도 수감되지 않은 채 거리를 마음대로 활보하는 상황은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의 출발은 내란 우두머리의 재구속이었다. 내란 특검은 그 점을 잘 알았고, 특검은 출범하자마자 신속한 수사로 그를 재구속시켰다. 수사기관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소임이었지만, 특검 출범 전까지 그와 같은 수사기관을 갖지 못한 우리로서는 그 당연한

업무를 한 내란 특검의 활동이 소중했다. 내란 특검의 중요한 성과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② 일반이적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

내란 사태가 발생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비상상황을 만들기 위해 드론을 북한에 침투시키는 등 국지전을 일으키려 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내란 특검은 수사를 통해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획책한 이들을 일반이적죄로 기소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징역 30년형이 선고된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지전 등 비상상황을 만들려고 했었던 일들이 재판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③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조태용, 최상목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상당 수 국무위원들이 내란 범행에 동조했을 것이라는 짐작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그 사실을 부인하였다. 내란 특검은 수사를 통해 그들이 내란 사태 당시 어떤 중요임무를 했는지 밝혀냈다. 법원도 재판을 통해 특검의 수사결과를 사실로 인정했다.

④ 정진석, 김주현, 윤재순, 강의구, 이원모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

윤석열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한 대통령비서실, 안보실에 대한 내란 관여도 의심이 되었다. 내란 특검은 수사를 통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비서실, 안보실 직원들 중 일부의 범행을 확인했고, 그들을 기소했다. 다만, 그들이 내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밝혀내지 못한 채 그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아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또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로 의율하여 기소했다.

⑤ 추경호 의원에 대한 기소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국회의 해제 의결 노력이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서로 협력했을 것으로 의심되었다. 내란 특검은 수사를 통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등과 소통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무를 한 것으로 파악했고, 추경호 의원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⑥ 내란 사건 형사재판에 대한 중계

시민들은 내란 사건 형사재판의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 싶어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요청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판 초기에는 방청권 부여를 통한 재판 공개만이 이뤄졌을 뿐이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재판 중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고, 특검도 이를 강력히 요구함으로 인해 내란 사건의 1심 재판 등이 중계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많은 시민들은 내란 사건 재판 과정을 영상을 통해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 영상 자료를 통해 재판부와 피고인 그리고 그들을 대리한 변호인들의 언행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특검이 공소 유지를 위해 제출하는 증거자료 특히 대통령실 CCTV 등의 영상자료를 통해서 국무위원들이 당시 어떻게 조력했는지,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지,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 특검과 비교되는 이전의 수사 상황 –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준 시간

내란 특검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2025. 6.경에 출범할 수 있었다. 그 때는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6개월이 지난 때였다. 진상규명 또는 실체적 진실발견의 핵심 관건은 일어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확보이다. 그래서 범행 직후의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수사실무에서는 상식이다.

그런데 내란 특검이 출범하기 직전까지 활동했던 일상의 수사기관들, 즉 검찰, 공수처, 경찰 국수본의 수사 내용은 내란 특검이 한 수사와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형사사법작용인 수사를 이야기할 때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수사기관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내세운다. 그 논리대로라면 수사기관은 어떤 성격의 정부이든 그에 상관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자기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어떤가. 내란 특검이 출범해서 종료하기까지 수사 기간은 180일에 불과했다(2025. 6. 18.부터 2025. 12. 14.까지). 그 이전 수사기관에게 주어졌던 시간도 6개월이었다. 그런데 그 앞의 6개월의 기간은 범행 직후여서 수사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더 용이하고 적절한 기간이었다. 또 검찰, 경찰 국수본은 특검의 수사인력, 시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수사결과는 어떠했는가. 현격한 차이가 난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걸까.

주권자들은 그런 앞뒤의 수사 상황을 비교해 보면서 검찰, 경찰 국수본, 공수처에게 그 기관의 존재의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이 한 수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검찰, 경찰 국수본,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었던 앞선 6개월의 기간은 수사를 했다고 보다는 오히려 주요 혐의자들에게 다가올 특검의 수사 칼날을 피할 수 있도록 증거를 인멸하고 훼손할

시간을 부여한 것처럼 보였다. 초동 수사의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들로 인해 내란 특검이 한 수사 결과를 적지 않은 성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라. 더 밝혀야 할 사실들(남겨진 과제들)

앞서 내란 사태와 관련한 질문과 관련해서 일반이적죄, 국무위원들의 협조,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관여 정도 등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일부 사실들이 밝혀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도 있다. 2차 종합특검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들은 향후 추가로 확인되어야 할 사실들로 보여진다.

1) 검찰의 내란 관여

미진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내란이 성공할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을 기관은 방첩사,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다. 그들만이 형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반대세력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관여 정도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상당한 의혹일 수밖에 없다. 특히 윤석열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다.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검찰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그는 검찰을 통한 수사를 중요한 통치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렇게 행동했던 그가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검찰의 주요 자원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1심 재판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내란 관여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재판부의 설명에 의하면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에 협조하려는 목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는 서울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특히 서울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는 그 대상이 국회 소재지와 관련된 관할인 서울남부구치소가 아니고 서울구치소에 대한 지시였다는 점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활용하기로 기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에 대응하는 서울구치소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검찰의 내란 관여 여부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사실이다. 또 재판부는 박성재가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 검찰총장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등의 인력 파견 요청에 대한 협조를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인해 검찰총장, 검찰국 검찰과장 등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는 것을 미리 알았고, 이를 전제로 파견할 검사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등 검찰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다른 기관과 달리 12·3 내란 사태의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의 관여 정도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와 같은 상황이 내란 특검에서 수사 실무의 중추적 역할을 검찰청 소속 검사가 맡는 현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내란의 실체와 전모에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검찰을 상대로 한 치밀한 수사가 추가로 이뤄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2) 노상원 수첩에 대한 진상

노상원 수첩이 작성된 경위, 그 내용 속의 이야기들은 여전히 큰 의혹이다. 그 수첩 내용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암살하거나 숙청하려 했었다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그 내용과 수첩 기재 형식에 비춰볼 때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것 보다는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적은 내용처럼 보인다. 특히 노상원 수첩의 일부 내용이 여인형 전화에서 확인된 문자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그 수첩 내용은 노상원 1인의 개인적 견해는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 수첩 속 내용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일당이 하려고 한 행위들을 계획한 계획도처럼 보인다. 노상원 수첩의 작성 경위, 내용의 구체적 의미, 그에 대한 준비 정도를 밝히는 것이야말로 내란 사건의 실체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 아닐까.

3) 정보사 등 군의 관여 정도

비상계엄을 이용한 친위쿠데타는 기본적으로 군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 부분 군의 인원과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12·3 내란 사태가 성공했더라면 이어지는 사회는 군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군사독재 체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이유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도 군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노상원 수첩의 내용도 군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 기소된 군인들만이 12·3 내란 사태에 관여했을 뿐인가 하는 의문들이 수밖에 없다. 특히 군이 가지는 보안성, 폐쇄성 등으로 인해 일반인들은 군의 자원과 시설은 물론이고 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12·3 내란 사태 당시 상당 수 군 관여자들이 정보사 등 비밀업무를 수행한 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내란 사건에 추가 관여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내란 직후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과 관련된 제보들도 적지 않았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의 인원과 시설이 오히려 국민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을 때 그 위험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위험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군에 대한 수사는 미진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내란의 동기

수사를 통해 내란의 동기에 관한 일부 사실들이 드러나긴 했지만, 그들이 일으키려 한 범죄의 성격이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모든 동기 또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려고 했던 동기가 제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서도 더 면밀한 수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5) 내란의 결심 시기와 내란의 준비 정도

그들이 비상계엄을 이용한 내란을 언제 결심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 2일 전으로 판단했고, 그에 비해 이진관 재판부는 최소한 2023년에 내란 범행을 결심하고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과 자료를 통해서도 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충분하고 세밀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내란의 구체적인 준비 정도를 확인한다면 역으로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결심한 시기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 수사-기소 분리와 특검 수사와의 관계

최근 검찰 개혁의 핵심 원칙의 하나인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하여 개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논리대로라면 수사-기소의 권한을 모두 가진 특검은 더 이상 설치해서는 안되고, 특검을 설치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주장을 한다.

그와 같은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 수사-기소가 분리된다면 이제는 수사-기소 권한을 일시에 갖도록 하는 특검 제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일까.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특검 설치 주장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일까.

일상적인 수사-기소 기관의 활동만으로 주요 범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특검의 필요성이 생기지 않는 사회가 이상적일 수 있다. 그런데 12·3 내란 사건처럼 매우 심각하고, 또 사안의 성격상 정치적 성격을 띤 사건 등이 발생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 과연

기존의 일상적인 수사기관의 대응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특별검사의 존재는 바로 그와 같이 ‘기존의 수사-기소 기관이 제대로 수사-기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증폭되는 특수한 사건에 대응하는 제도이다. 특검 제도의 성격으로 인해 독립성을 가지고, 한시적이며,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 등이 한정적이다. 이렇게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대상을 상대로 한 기구라면 수사-기소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함께 부여하더라도 그 권한남용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그에 반해 신속한 수사-기소를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건들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정적인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그 활동 기간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 일시적 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수사-기소의 권한을 모두 특검에 부여하더라도 권한오남용의 위험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 특히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한시적 특검법이 의결되어야 비로소 특검이 설치된다는 점에서 수사-기소 권한의 일시적 융합은 허용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논거로 특검의 존재나 필요성을 가져다 이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자의 병행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이 잦은 특검 설치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특검의 필요성은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5. 내란 관련 재판에 대한 평가

가. 총괄

지금까지 대법원 판단으로 확정된 내란 관련 사건은 노상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이 유일하다. 현재 항소심까지 마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윤석열 등의 체포방해사건, 한덕수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이상민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등 3건이다. 나머지 사건들은 아직 1심 또는 2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1심 재판조차 마치지 않은 사건도 상당하다.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재판부에 있다 보니 판결 이유의 내용에서 상호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재판 진행에 있어서도 집중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다행히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전담판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종전보다 신속하고 집중된 재판이 가능해졌다.

나. 사법적 단죄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에서 가장 우선해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사법적 단죄이다. 사적인 제재가 금지된 근대 사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그가 한 범죄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이 바로 사법적 단죄이다. 사법적 처벌은 근대 국가 이후로 공동체 내에서 이뤄지는 유일무이한 합법적 처벌로서 의의를 지닌다.

앞으로 역사 연구자들을 통해 12·3 내란 사태의 역사적 평가는 무수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적 절차를 통해 수사가 이뤄지고, 재판이 진행되며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 피고인들에 대해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형사사법절차를 통해서 그가 한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내리는 1차 평가로서의 의미가 있다. 그런 이유로 재판절차를 통한 사법적 단죄의 의의는 매우 크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1심 법원의 사법적 단죄는 무기징역이었다.

다. 지연된 재판

재판은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재판의 신속성이 지나치게 후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12·3 내란 범죄처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시도를 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커져 있을 때 신속한 사법적 단죄는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공동체의 이완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등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집중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또 특별법을 제정하여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법원조직법 등 기존 법률이 정한 허용 범위 내에서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사법부의 의지가 보태진다면 신속한 재판은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신속한 재판을 법으로 정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12·3 내란 사건으로 기소된 재판의 더딘 진행은 시민들의 바램과는 달리 사법부는 신속한 내란 종식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특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상황과 비교해 보면 그 지연의 정도는 뚜렷하다.

<주요 12·3 내란 관련 사건의 1심 재판 기간과 공판 횟수>

연 번	피고인	죄명	공소제기일	선고일	재판기간	공판횟수
1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25. 1. 26.	26. 2. 19.	1년 24일	44차례 준비 13차

		특수공무집행방해	25. 7. 21.	26. 1. 16	5개월 26일	16차례 준비 1차
		일반이적	25. 11. 10.	26. 6. 12.	7개월 2일	26차례 준비 1차
2	김용현	내란중요임무중사	24. 12. 27.	26. 2. 19.	13개월 23일	
3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중사	25. 8. 29.	26. 1. 21.	4개월 23일	12차례 준비 1차
4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중사	25. 8. 19.	26. 2. 12.	5개월 24일	14차례 준비 2차
5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중사	25. 12. 11.	26. 6. 22.	6개월 11일	17차례 준비 1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 기간과 공판 횟수>

연 번	피고인	죄명	공소제기일	선고일	재판기간	공판횟수
1	박근혜	직권남용 등	17. 4. 17.	18. 4. 6.	11개월 19일	116차례



(출처: 박은정 의원 SNS)

이러한 답답한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사법부에 내란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종식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최대한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맡은 항소심 법원은 물론이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기 전에 재판을 시작했던 다른 재판부도 위 특례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속한 재판을 하려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한 현상이다.

라. 판결 내용의 상충

내란 관련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무려 10개에 이른다. 제21, 23, 25, 26, 30, 32, 33, 34, 35, 36 형사부가 모두 내란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위 재판부 중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재판부도 있지만, 1심 판결이 선고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보면 사실관계 등에 있어서 서로 충돌되는 내용이 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판결의 상충은 지귀연 부장의 재판부(제25형사부)와 이진관 부장의 재판부(제33형사부)의 사실인정 부분과 증거가치 판단의 충돌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일당이 내란 범행을 결심한 때를 2024. 12. 3.의 이틀 전인 것처럼 사실인정을 했다. 그에 비해 이진관 재판부는 내란 범행의 결심이 최소한 2023년이고, 그 때부터 내란을 준비했다고 판단하였다.

또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양 재판부는 아래의 판시 내용처럼 완전히 다른 판단을 했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상원 수첩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

노상원 수첩 등은 그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특히 그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담겨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진관 재판부의 노상원 수첩에 대한 증거가치 판단>

노상원의 수첩 필기가 조악한 것은 노상원이 김용현의 발언을 그때그때 현장에서 받아 적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 있었던 것은 윤석열 등의 내란행위가 이른바 ‘친위쿠데타’라는 성격상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사기관이 가까운 시일에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노상원의 수첩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

각 재판부는 독립해서 재판을 한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사법부의 구성 및 운영 원리이다. 따라서 각각의 법원은 그 법원을 구성하는 각 법관들의 판단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자신의 판단을 하는 것이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와 판단을 할 수 있다. 위 양 재판부의 판단이 서로 다른 것은 이러한 이치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동일한 사실과 증거들을 기초로 한 사실의 인정이 서로 다른 것은 이상하게 보인다. 특히 내란의 결심 시기, 그리고 그 결심에 따른 준비행위를 한 시기 및 준비행위의 정도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른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란 범행의 결심 시기 및 그에 따른 준비행위의 정도 등은 범행의 성격, 그 범행 관여자들의 범위에서 차이를 낳고 각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상급심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판단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문제

지귀연 재판부는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지귀연 재판부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선불리 사법심사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밝힌 위와 같은 법리, 즉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는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지금까지 판시해 온 법리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 위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종전부터 판단해 온 법리이기도 하다.

<윤석열 탄핵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문(헌재 2025. 4. 4. 2024헌나8)>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비록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대법원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법원이 심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12·12 군사반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해진 경우에는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비록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의 12·3 내란 행위에 대하여 내란죄의 성립을 인정했지만, 그 법리를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마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또 사법부가 함부로 계엄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거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죄를 곧바로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법리로 설명하는 부분은 위법한 판단이다. 그것은 자칫 후대의 권력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할 빌미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법리이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내용이다.

6. 글을 마치며

45년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국민에 의해서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앞세워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는 참담함과 참혹함을 느끼게 하였다. 하지만 충격과 참담함도 잠시였다. 5·18 등 우리가 경험했던 역사는 시민들로 하여금 몸이 먼저 움직이게 했고, 그런 이유로 우리는 내란범의 폭거를 온몸으로 막을 수 있었다. 민주 시민들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남동 관저 앞 대로에서, 광화문에서, 남태령에서 우리의 일상과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다시는 이 땅 위에 권력자에 의한 내란, 외환의 참혹한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 이를 바탕으로 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은 사법적 단죄의 시간이다. 그리고 그것은 제대로 된 사법적 단죄여야 한다.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로, 계속된 특검과 내란재판 보도로 인해서 피로감이 쌓인다는 이유로 그 단죄의 내용과 정도가 느슨해 저서는 곤란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들, 또는 들키지 않은 채 시민들 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내란의 잔당들은 시민들이 피로해 하고 지쳐 가기를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날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 모른다.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우리는 지치지 않아야 한다. 다시는 그 누구도 내란, 외환의 범행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내란과 외환의 진상을 모두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법적 단죄를 모두 마쳐야 한다. 또 내란에 부역했지만, 아직 숨어서 발견되지 않은 공범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사법적 단죄와 역사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내란 종식을 위한 입법·행정 조치의 평가와 향후 과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을 중심으로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학박사

1. 들어가며

12.3 내란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하여 추진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이하 ‘헌법존중 TF’)'는 일명 '내란 청산 TF'로 불리며, 12.3. 이후 행정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내란을 청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발제에서는 헌법존중 TF의 설치 배경과 조직 구조, 구체적인 조사 경과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시민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헌법존중 TF의 활동 경과

가. 구성 및 운영 체계

헌법존중 TF는 총괄 부서와 개별 부처의 이원화 체계로 구성되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총괄 TF'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으며,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개별 TF를 구성하여 자체 조사를 실행하도록 하였다.

구분	주요 구성원 및 설치 범위	핵심 역할 및 임무
총괄 TF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인력 중심	기관별 TF의 활동 점검·관리, 제보센터 운영 및 자체 조사 총괄 컨트롤타워
기관별 TF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개별 설치 (국방부 53명,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상계엄 가담 행위 및 위법 지시 이행 여부 조사

	30명 등 대규모 구성)	
외부 자문단	군·경찰·법률·조직 인사 분야 전문가 4인 ¹	조사 과제의 적정성 점검, 조사 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검증
내란행위 제보센터	국무조정실 및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	우편, 전화, 이메일, 직접 방문 등을 통한 공직자 불법행위 제보 접수 한시적 운영(2025. 12. 12.까지)

국무총리는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는 신속·균형의 운영 원칙을 표방하였다. 대통령실도 TF의 지향점이 단순한 숙청이 아니라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 사회의 통합 및 안정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공직 사회의 심리적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으로 평가된다.

총괄 TF 외부자문단은 군, 경찰, 법률, 행정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의 임기 동안 전체 조사 과제의 적정성을 기획하고 검토하는 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 부처별 조사 대상 및 범위

헌법준중 TF는 불법 계엄 선포 당시의 행정적 연루 가능성과 직무 고유성을 기준으로 전체 49개 중앙행정기관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일종의 차등화된 조사를 시행하였다.

유형	해당 기관
중점 점검 기관	총리실(국조실+총리비서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일반 점검 기관	교육부, 통일부, 기후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 국세청, 방위사업청
조사 과제 제외 기관	과기정통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성평등),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데이터),

¹ 임태훈, 최종문, 김정민, 윤태범

	특허청(지재),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재외동포청, 병무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

중점 점검 기관에 포함된 행정안전부는 **2025년 11월 24일**부터 소속 공무원들의 계엄 가담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자체 TF를 가동하였으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자들의 비상계엄 가담 행위 신고를 접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반면, 조사 과제가 식별되지 않은 **30개** 기관은 행정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말** 자체 활동을 공식적으로 조기 종료하였다.

다. 조사 일정 및 경과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전 중앙행정기관 내 TF 설치 공식 결정
 2025년 11월 21일 국무조정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공식 출범
 2025년 11월 24일 49개 행정기관 자체 TF 구성 완료 및 본격 활동 개시
 2025년 11월 27일 김민석 총리, 계엄버스 탑승 군 간부에 대한 재징계 및 엄중 문책 지시
 2025년 12월 5일 내란 가담 공직자 자수 시 징계 면책 및 감면 대책 발표
 2025년 12월 12일 한시적으로 운영된 '내란행위 제보센터' 접수 마감(총 68건 검토 회부)
 2025년 12월 말 조사 과제가 없는 30개 행정기관 TF 활동 종결
 2026년 1월 16일 나머지 20개 중점·일반 기관의 현장 조사활동 최종 종료²
 2026년 2월 12일 국무조정실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 종합 공식 발표

조사 초기인 11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계엄 당시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들에 대한 미온적 처분을 지적하며 재징계를 지시하였다. 또한 1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보센터를 통해 내란 행위 관련 제보 68건을 접수하고 심층 조사 과제로 분류하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2월 12일 국무조정실의 공식 종합 브리핑을 통해 전체 조사 경과와 후속 조치를 발표하였다.

라. 조사 결과

² 조사 마무리 단계였던 2026년 2월 11일 밤, 징계 요구와 수사의뢰 건수 등 민감한 처분 수치가 언론에 먼저 유출되는 일이 있었다.

헌법존중 TF가 도출한 최종 결과는 다음 두 가지다.

① 12.3 불법계엄은 정부의 기능 전체를 입체적으로 동원하려는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던,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

- 권력의 정점에서 시작된 판단과 지시가 무력을 보유한 군과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능을 보유한 여러 기관으로 전달되어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음을 확인
-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지시가 일제히 내려졌으며,
- 국회의 계엄해제 권고가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유지를 위한 시도가 있었으며,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되었음

②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관점에서 행정부는 정상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

- 불법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하였으며,
- 일부 공직자들의 불법계엄에 대한 저항 혹은 과잉 협조도 있었지만,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인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이었던 것으로 확인

(1) 위로부터의 내란과 행정 동원

행정부의 자체 규명 결과, 12·3 사태는 군과 경찰 등 무력 기구만을 활용한 단선적 정변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 기능 전체를 마비시키고 동원하려 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었다. 계엄이 선포된 직후, 최고 권력의 의사는 각 부처의 고유 업무 성격에 맞춰 하달되었다.

예를 들어, 국가안보실은 외교부를 압박하여 해외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부당성을 감추고 조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불법적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행정부 내부에서는 계엄 상태를 유지하려는 시도가 지속되었으며 해제 이후에도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건 포착되었다.

(2) 헌법적 검증 장치의 부재와 공직 사회의 순응

행정부의 그 어떤 공식적인 체계에서도 상부로부터 하달된 계엄 지시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했다는 흔적은 없다.

일부 하급 공무원들의 개인적 저항이나 자발적 태업이 존재했으나,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고위 공직자 다수는 최고 권력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망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예를 들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계엄사령부에 인력 지원 및 무기(총기) 불출, 유치장 개방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행태나,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소방 공무원들이 언론사 통제를 목적으로 한 전력·용수 차단(단전·단수) 작업에 동원 직전까지 내몰렸던 사례는 공직사회의 위헌 위법에 대한 불감증을 노출하고 있다.

마. 주요 기관별 사후 조치 현황

헌법존중 TF는 조사를 마친 뒤, 위법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사법적·행정적 신분 조치를 요구하였다. 국무조정실이 최종 확정된 통계에 따르면 수사의뢰 110건, 징계 요구 89건, 주의 및 경고 82건이 처분되었다.

조치 유형	건수	사후 행정 절차
수사의뢰	110건	국가공무원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거, 사법기관 및 내란 전담 수사본부로 사건 이관
징계 요구	89건	공무원의 의무 위반 및 위법 명령 복종에 따른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요구
주의·경고	82건	위법 지시를 소극적으로 방조하거나 관망한 공직자에 대한 경고 조치

국방부 TF는 총 860여 명의 군 관계자를 조사하였으며, 12·3 계엄 당시 1군단장으로서 불법 임무 수행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주성운 현 지상작전사령관을 직무에서 즉각 배제하고 수사의뢰 조치하였다. 사법 처리 대상자 114명을 포함해 총 182명의 군인에 대해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하였다. 또한 기존의 특별검사가 미처 완수하지 못한 국군정보사령부 및 국군방첩사령부 내의 진상규명을 위해, ‘내란 전담 수사본부’(본부장 박정훈 준장)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다.

외교부의 경우, 징계 요구 3건과 수사의뢰 2건의 처분을 확정지었다. 통일부 등 일부 부처는 자체 TF 조사 결과 비상계엄과의 뚜렷한 가담 연관성이 입증된 소속 직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하며 기관별 자체 감사를 일단락하였다.

3. 평가

가. 행정부 내부 통제 및 견제 시스템 부재

헌법존중 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행정부의 내부 통제 체제와 견제 시스템이 내란과 반란에 직면하여 구조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를 정부 스스로 공식 인정하였다(“불법계엄의 진행 과정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하였”음).

행정부 내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법 집행의 정당성을 감시해야 할 고위공직자 다수가 위헌적·위법적 지시를 우선하여 이행하거나,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조·관망하는 기회주의적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헌법존중 TF는 단기간에 걸쳐 제한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행정부 내 시스템 마비를 자인하였다. 전면적인 인적, 구조적 혁신이 없다면 12.3. 내란과 같은 상황에서 관료 조직은 다시 같은 행태를 반복할 것이다.

나. 핵심 자료 비공개로 인한 투명성 결여 및 평가의 한계

헌법존중 TF는 국가 공조직 내의 위헌적 작동 기제를 청산한다는 중대한 명분을 내걸고 출범하였으나, 활동 결과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비공개로 처리함으로써 투명성을 스스로 저해하고 있다.

TF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한 세부적인 조사 결과 보고서는 물론, 총괄 TF 자문위원단의 심의 안건 및 회의 결과까지 법률상(‘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근거를 들어 대외 비공개 처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내란의 전후 공직 사회의 내부적 가담 경로와 의사결정의 전말을 명백히 밝혀야 할 정부의 책무와 거리가 먼 조치다.

각 부처가 저지른 구체적인 과오와 그에 대한 조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시민사회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집단에 의한 다각적인 검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 브리핑 결과만을 받아든 상황이다.

개별 부처의 면피성 조사나 소극적 은폐 시도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회의록과 부처별 보고서가 공개되어야 한다.³

다. 조기 종결 공식 발표의 문제

TF는 조사 마무리를 선언하며 수사의뢰된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부 차원의 내란 관련 일제 점검을 원칙적으로 조기 종결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내란 청산의 과제를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행정부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뻗어 있는 위법 행위와 잔존 세력에 대한 철저한 규명 책임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이를 특별수사본부나 내란 전담 수사본부, 특검 등 외부 수사기관의 몫으로 전가하였다. 행정조사의 범위를 스스로 축소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몇몇 성과를 보인 후 조기에 활동을 종결한 것이다. 사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할 행정적 개혁과 공직 기강의 확립 과제는 미완의 상태로 멈춰 서게 된 것이다.

정치적 동요를 최소화하고 공직 사회의 안정을 기한다는 단기적인 정무적 판단이, 내란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근본적인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시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라. 행정 조사의 한계 및 제재의 실효성 부족

헌법준중 TF가 수행한 조사는 행정조사가 지닌 강제력의 한계와 실효성 부족 문제를 노출하였다.

TF가 총 281건의 사후 조치를 도출해내는 양적인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부 내부의 일차적인 판단일 뿐이다. 실질적인 인적 청산과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전적으로 행정부 외부에 존재하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에 종속되어 있어 사후 조치의 즉각적인 효력이 반감된다.

³ 정부는 공직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의 공개를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란 조사 자료의 비공개가 공직사회를 안정시키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압수수색이나 강제 구인 등의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대면 조사와 자발적 제보에 상당 부분 의존했기 때문에, 고위직 간의 은밀한 모의나 문서화되지 않은 암묵적 지시의 전말을 파헤치는 데는 구조적인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마.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재발 방지 대책의 한계

TF는 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으로, 향후 공직자의 모든 행동과 판단 기준이 '상급자의 지시'가 아닌 '헌법과 법률'이 되도록 행정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안은 구체적인 실행 메커니즘이 결여된 전형적인 선언적 구호에 불과하다.

대통령, 행정부처 장관 등 윗선의 위헌, 위법 지시가 내려오는 긴박한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이 이를 실질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절차적 통로가 제시되지 않았다.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이를 외부로 고발한 공직자가 조직 내에서 겪게 될 직무 배제, 인사상 불이익, 징계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TF는 “다시는 국민이 위험을 감수하며 헌정질서 수호에 나서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먼저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책임있는 행정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조직논리와 상명하복이 지배하는 관료제적 현실에서, 헌법 준수라는 당위적 명제만 던져주는 것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결단만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상급자의 위법 지시에 대한 명확한 거부 절차를 규정하고,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를 원천 금지하는 구체적인 입법·사법적 연계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정부가 제시한 재발 방지 대책은 향후 유사한 헌정 위기 상황에서 또다시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향후 과제

가. 위법지시 거부권의 실효적 법제화 및 공직자 보호 체계 구축

헌법준중 TF의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국가 위기 상황에서 관료사회의 맹목적 복종과 시스템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판단 기준을 '상급자의 지시'가 아닌 '헌법과 법률'로 전환하기 위한 법제화가 최우선 과제이다. 현재 한국 관료 체제를 지배하는

상명하복의 문화를 깨뜨리고, 위헌적 명령에 정당하게 저항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 개정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제57조)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도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제25조)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법리가 인정되어 왔으나 이는 선언적 수준에 그쳐왔다.

상급자의 지시가 위헌·위법함이 명백하거나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경우, 일선 공무원이 공식적으로 지시 이행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부권을 법률상 보장해야 한다. 명령의 위법성 여부를 하급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심리적·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도 있다.

독일의 경우(연방공무원법 제63조), 1)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이 위법하다고 의심되면 지체 없이 직속 상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2) 그럼에도 명령이 유지되고 그 적법성에 대한 의심이 계속된다면, 차상위 상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3) 그 명령이 확정되면 공무원은 집행하여야 한다. 이로써 해당 공무원 자신은 면책된다. 4) 다만, 지시된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형사처벌 또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고 공무원이 그러한 형사처벌 가능성 또는 질서위반성을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 5) 재난, 테러, 긴급 상황 등 상급 상관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긴급한 정이 있는 경우, 직속 상관이 즉각 집행을 명령하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확정하면 하급자는 일단 집행하되 면책된다. 6) 공무원은 사후에라도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시를 내린 상관에게 지체 없이 사후 서면 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명령을 내린 상관은 해당 명령을 서면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2) 거부권 행사의 공식 절차화

상급자의 위헌 위법한 구두 지시나 부당한 압박이 있을 때, (위 독일 공무원법과 같이) 하급 공무원이 이에 대한 서면 해명이나 공식 서면 지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공직 불이익 금지 및 신분 보장 장치 강화

위헌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공익 제보한 공직자가 조직 내에서 직무 배제, 인사상 불이익, 징계 등의 징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당 지시 거부를 이유로 가해지는 보복성 인사를 제한하고 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 시 입증 책임을 징계권자(상급자)에게 전환하는 입법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위법 명령을 거부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상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나. 독립적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형사 처벌 중심의 사법 절차나 행정부 자체 TF 수준의 한시적 조사만으로는 12·3 내란의 원인과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를 완전히 밝혀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에 이미 발의된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4797)’의 취지와 같이,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정권의 정무적 판단이나 관료 사회의 온정주의에 휘둘리지 않도록 독립 기구로 설치되어야 한다.⁴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역시 최소 1년 이상 보장하여 단기적 출구 전략에 급급했던 기존 행정 조사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 헌법준중 TF가 강제 조사권의 부재로 실체적 진실 접근에 한계를 겪었던 점을 거울삼아야 한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및 출석 요구, 청문회 실시, 동행명령장 발부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나아가 피조사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인멸·은닉할 위험이 있을 경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을 부여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확인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 또는 수사 요청을 하고,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적발되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사후 조치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행정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도출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다. 군·경·검 등 행정부 전반의 문서·기록 조사 및 전면 공개

12·3 내란을 전후하여 생산된 군, 경찰, 해경, 검찰, 국가정보원, 대통령실, 행정각부 등 행정부 전반의 문서와 기록을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⁴ 발의된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8명, 시민단체와 학계 추천 4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되었던 정당의 추천권은 배제한다.

한다. 핵심 자료를 비공개하여 외부 검증을 차단했던 기존 TF의 투명성 결여 문제를 상기해야 한다.

(1) 조사 대상 기록의 범위

조사 범위는 12·3 내란의 모의 단계부터 실행 상황,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각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 및 세부 역할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예를 들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군령 및 군정 문서, 경찰의 병력 배치 및 치안 상황 보고서, 검찰의 내부 동향 및 기획 문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불법 지시 하달 경로를 담은 모든 행정 기록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대통령기록물 열람 및 사본 제작 권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을 직접 열람하고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3) 기록의 전면 공개

조사 과정에 대하여 정기적인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청문회를 개최하여 대국민 보고를 할 필요도 있다. 최종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내란의 전말을 담은 진상조사보고서(백서)를 발간하고 공식 기록물로 보존하여야 한다.

라. 내란 가담 핵심 부처의 전면적 인적 청산 및 구조 개혁

TF가 확정된 징계요구 89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조치는 일차적인 행정적 조치에 불과하며, 내란에 동원되거나 부역한 핵심 권력기관들의 인적 청산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최고 권력의 명백히 위법한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관망했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히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의 직무 배제 및 수사의뢰 사례와 같이, 위험적 명령 체계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지휘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직 사회에서 배제해야 한다. 단순 사법 처리 대상 유무를 넘어, 공직자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한 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 불이익과 승진 제한 등 인적 인프라의 인위적 재편이 필수적이다.

군과 검찰 내부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는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군 사법 체계의 민간 이양, 검찰과 경찰의 개혁이 행정부의 인적 청산과 병행되어야 한다.

마.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과 관련 정보의 공개

(1) 정보공개법 개정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 의사결정 과정의 보호 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9조). 그러나 내란, 헌정 질서 파괴 행위(이에 더하여 중대한 인권 침해 및 위법한 권력 행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안보나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비공개할 수 없도록 절대적 공개의무를 신설해야 한다.

(2) 백서 발간 및 공개

또한 행정부 내부의 과오와 조사 과정 전반을 왜곡 없이 담은 '내란 가담 및 조사의 전말에 관한 범정부 백서'를 전면 공개 발간해야 한다. 은폐·파기되기 쉬운 고위직의 의사결정 문서, 회의록, 통신 기록 등을 '국가 중요 기록물'로 지정하여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영구 보존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바. 헌법 가치에 대한 교육의 제도화

기존 민주 시민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여, 헌법 가치 교육을 위한 법제를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부 기구 설치 및 관련 연구소 설치도 고려될 수 있다.

5. 나가며

헌법준중 TF의 활동은 12·3 내란에서 행정부 내부의 위험적 작동 메커니즘을 진단하고 인적·행정적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세부 보고서의 비공개 방침으로 인한 투명성 결여, 범정부 일제 점검의 조기 종결, 강제 조사권 부재에 따른

태생적 제약 등은 사법 처벌과 실질적 규명을 외부 수사기관에 의존하게 만드는 한계를 갖는다.

형사 절차 중심의 처벌만으로는 행정부 각 부처의 고위공직자들과 권력기관 전반에 걸쳐 나타난 위헌, 위법 행위(또는 부작위)의 구조적 원인을 온전히 규명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내란청산을 특검에 의존하면 그 진상규명의 폭은 형사책임에 한정된 특검의 시각에 종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도적 차원의 내란 종식과 민주적 헌정질서 복원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독립적 조사기관의 종합적이고 강도높은 조사가 필수적이다. 군·경·검 등 행정부 전반의 문서, 기록 및 그 행태를 전수조사하고 공개함으로써 내란의 전모를 심층적으로 규명하여야 한다. 이에 더해 위법지시 거부권의 실효적 법제화, 행정조사권의 권한 강화, 정보공개법 개정이 요구된다.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 처벌을 넘어 기억으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1. 들어가며 :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내란 종식'

두 발제문은 12·3 내란에 대한 수사와 재판(박용대), 그리고 입법·행정 조치(유승익)의 성과와 한계를 꼼꼼하게 짚어 주었다. 토론자는 정치학의 관점에서 이 논의를 한 걸음 넓혀 보고자 한다. 12·3 내란은 특정 개인들의 범죄이기 이전에 한국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었다. 따라서 '내란 종식'은 주동자 처벌로 완결되는 형사사법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입은 상처를 치유하고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체제 회복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 내란 종식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① 조사·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② 재판·판결을 통한 책임 규명과 처벌, ③ 재발 방지를 위한 각 영역의 제도개선, ④ 사회적 기억과 확산이 그것이다. 앞의 셋이 수사기관·법원·행정부·입법부 등 국가기구가 담당하는 과제라면, 넷째는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교훈을 어떻게 다음 세대와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다. 토론자의 판단은 이렇다. ①~③은 불만족스러운 대목이 적지 않음에도 궤도를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④를 위한 국가적 프로그램은 사실상 부재하다.

2. 진상규명 · 책임규명 · 제도개선 : 불만과 함께, 그러나 궤도 위에

박용대 발제문이 정리했듯, 수사는 초기 국면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수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특검 출범 이후 본궤도에 올랐고,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물론 한계는 뚜렷하다. 윤석열 1심 재판부(지귀연 재판부)가 채택한 "비상계엄 선포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리는 현재 2024헌나8 결정 및 대법원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험한 판단이며, 노상원 수첩의 증거력과 계엄 준비 시점('계엄 이틀 전'인가 '최소 2023년'인가)을 둘러싸고 재판부 간 판단이 엇갈리는 등 항소심에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쟁점이 남아 있다. 발제문이 열거한 미해명 과제들이 보여주듯 진상규명 역시 아직 '진행형'이다.

사법부 역시 늦게나마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심리의 집중과 전문화를 꾀했다. 행정부 차원에서도 유승익 발제문이 평가한 대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부처별 자체 조사를 통해 수사외 110건, 징계 89건, 주의·경고 82건의 조치를 했고, 공무원의 위법한 명령 거부권 법제화(독일 연방공무원법 제63조를 참조한 복종의무의 한계 명문화),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기록 접근성 확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안되어 있다. 물론 TF 방식의 자체 조사가 갖는 한계, 입법 과제의 더딘 진척 등 유승익 발제문이 지적한 문제들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요컨대 진상규명·책임규명·제도개선의 세 트랙은 - 속도와 철저함에 대한 불만은 있을지언정 - 제도의 궤도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두 발제문의 비판은 이 트랙을 멈추자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고 철저하게 가자는 요구로 읽어야 한다.

토론자가 주목하는 것은 그다음이다. 이 세 트랙이 모두 완주하더라도 - 모든 판결이 확정되고 모든 법이 통과되더라도 - 그것으로 내란 종식이 완성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토론문의 요지다.

3. 부재한 네 번째 기둥 : 사회적 기억과 확산

민주주의 연구가 반복해서 확인하는 사실이 있다. 쿠데타와 내란의 재발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은 제도가 아니라 시민의 기억과 규범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정교한 제도도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적 합의가 없으면 우회되고, 판결문은 세대가 지나면 잊힌다. 12·3 밤에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명령의 이행을 지연하고 주저한 일부 군인들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1980년 광주와 1987년 6월에 대한 사회적 기억이었다. 이번에 우리를 지킨 것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었다면, 다음 세대를 지킬 것은 12·3에 대한 기억이다. 그 기억을 어떻게 사회화할 것인가는 사법 절차 못지않게 중대한 국가적 과제다. 그런데 이 영역에는 아직 어떤 국가적 프로그램도 없다. 최소한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 기록의 체계적 공개: 군·검찰·경찰·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보유한 12·3 관련 기록(수사기록, 재판기록, 군 지휘통신 기록, 국무회의 기록 등)을 수사·재판 종결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관·공개하는 법적 틀과, 이를 통합 관리할 (가칭) '12·3 내란 기록관'의 설립.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이르렀던 경험이 참조점이 될 수 있다.
- 학술 연구 프로그램 지원: 내란의 원인·전개·대응을 다루는 학제간 연구(정치학·법학·사회학·군사사회학·언론학 등)에 대한 지속적 연구비 지원과 참여자·목격자 구술사 채록 사업. 기록이 공개되어도 연구가 없으면 사회적 지식이 되지 못한다.

- 시민사회 공론화 사업 지원: 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학교 민주시민교육과의 연계, 지역 단위의 전시·증언대회·시민 아카이브 등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기억·확산 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

독일의 나치 과거 청산은 유용한 참조 사례다. 흔히 뉘른베르크 재판을 떠올리지만, 독일의 과거 청산(Vergangenheitsbewältigung)은 재판이 끝난 뒤에 오히려 본격화되었다. 1958년 설치되어 지금까지 나치 범죄를 수사하는 루트비히스부르크 나치범죄 규명 중앙사무소, 자국 법정에서 자국민 가해자를 단죄하며 68세대의 각성을 촉발한 프랑크푸르트 아우슈비츠 재판(1963~65),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연방정치교육원(bpb), 정부와 기업이 공동 출연해 강제노동 피해 보상과 역사교육 사업을 지금도 수행하는 '기억·책임·미래' 재단(2000), 베를린 도심 한복판의 홀로코스트 기념비(2005)와 일상 공간의 슈톨퍼슈타인(걸림돌), 그리고 방대한 기록을 공개해 온 아롤젠 아카이브에 이르기까지, 독일은 사법·기록·연구·교육·기념을 아우르는 국가적 인프라를 수십 년에 걸쳐 구축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두 가지다. 첫째, 과거 청산은 몇 년짜리 사법 절차가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사회적 학습 과정이며 "과거사 정리에는 종료가 없다". 둘째, 그 과정을 지탱한 것은 정권의 의지가 아니라 기록·연구·교육·기념이라는 제도화된 인프라였다.

4. '내란청산 피로감',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권에서는 이미 청산 작업을 공격하는 담론이 자리 잡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 추진을 "지방선거까지 내란 물의를 계속하려는 치졸한 선거전략"이라 규정했고, "내란몰이 광풍 속에서 국민들은 민생 파탄에 시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계엄팔이·내란몰이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민생과 국익을 우선할 결심"을 하라고 요구했으며, 국민의힘 중진들은 소속 의원들에 대한 특검 수사를 "무도한 정치 테러이자 정치 탄압"이라 불렀다. 이 담론의 공통 구조는 '청산 대(對) 민생'이라는 제로섬 대립 구도다. 청산에 쓰는 시간은 민생에서 빼앗은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의 '적폐청산 피로감' 담론과 동형적이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과거로 방향을 돌린 적폐청산에만 매달렸기 때문"이라고 규정하는 평가가 보수 진영과 일부 학계·언론에서 반복되었고, 임기 말에는 "미래보다 과거에 치중한 국정운영"이라는 총평이 하나의 정형화된 서사가 되었다.

그러나 이 서사는 원인을 잘못 짚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국면의 조성과 코로나19 초기 대응 등에서 분명한 성과를 냈고, 적폐청산 작업 자체는 촛불 이후 시민 다수의 지지 위에서 출발한, 응당 해야 할 일이었다. 임기 말의 부정적 평가는 적폐청산을 '너무 열심히' 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비롯한 현안 대응의 실패와 미래 비전

제시의 부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에서 온 것이다. 시민들은 과거를 청산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응답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문제는 청산이라는 과제 자체가 아니라, 정치가 그 과제를 다루는 방식이다.

피로감은 두 경우에 발생한다. 첫째는 단계론이다. "내란 종식이 먼저이고 다른 모든 것은 그다음"이라는 사고로 청산을 모든 의제의 선결조건으로 만들면, 청산이 길어질수록 다른 의제들이 불모로 잡힌다. 둘째는 전가론이다. 현안·미래 대응의 무능이나 실패를 청산 의제로 덮으려 하면, 시민들은 청산 자체를 정치적 도구로 인식하게 된다. 거꾸로 말하면 해법도 분명하다. 청산은 장기적·단계적 과제로서 그것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되, 민생·현안·미래 의제와 병행하는 '두 트랙'을 유지하는 것이다. 독일 사례가 보여주듯 내란 청산은 10년, 20년에 걸쳐 계속되어야 하고 또 그럴 수 있다. 청산을 서둘러 '끝내야 할 국면'으로 취급하는 순간, 오히려 피로감 담론에 청산의 운명을 넘겨주게 된다.

5. 맺으며

내란 종식의 완성태는 특정 재판의 확정판결이 아니라 '내란을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사회'다. 그 사회는 처벌만으로는 오지 않는다. 처벌의 시간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설수록 기억의 시간을 시작해야 하며, 그 작업은 정권의 부침과 무관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토론자는 기록 공개, 학술 연구 지원, 시민사회 공론화 지원이라는 세 개의 프로그램을 담은 (가칭) '12·3 내란 진상규명 및 기억·계승에 관한 특별법' 논의를 지금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두 발제문이 보여준 처벌과 제도개선의 성과 위에, 이제 네 번째 기둥을 세울 차례다.

참고 자료

- 박용대, 「내란 수사와 재판, 내란 종식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유승익, 「내란 종식을 위한 입법·행정 조치의 평가와 향후 과제」(본 좌담회 발제문)
- 장동혁·나경원 등 발언: 2차 종합특검 관련 국민의힘 논평 및 기자회견 보도 (2025~2026년 언론 보도)
- 문재인 정부 평가 관련: 한반도선진화재단 「문재인 정부 5년 평가」(2022); 「한국의 '적폐'정치: 역대 정부의 역사적 청산의 궤적과 과제」(KCI 등재 논문); 미디어오늘 「文정권 적폐청산과 내로남불이 키운 '검찰국가」

- 독일 과거 청산: 기억·책임·미래 재단(EVZ), 루트비히스부르크 나치범죄 규명 중앙사무소, 연방정치교육원(bpb), 아를젠 아카이브 등 공개 자료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 토론문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내란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제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전 국무총리실 헌법준중 정부혁신 총괄TF 자문위원

I. 들어가며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친위쿠데타(불법 비상계엄)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정질서 침해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었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향후 동일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번 토론에서는 내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특별검사 제도의 개선, 군대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내란 방지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내란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

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초기 수사의 문제점

12·3 비상계엄 당시 친위쿠데타 병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핵심 인물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었다. 김용현은 계엄 선포 직전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수도권 가용 병력의 운용계획을 보고한 인물이기도 하며, 친위쿠데타 실행 과정에서도 군 병력 동원과 작전 수행을 총괄한 내란우두머리 다음으로 핵심적인 내란중요임무종사자다.

그러나 내란이 실패한 직후 수사기관의 대응은 신속하지 못했다.

친위쿠데타 다음날 12월 4일 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이어 12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계엄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개최하고 김용현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김용현은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였고, 내란주범인 윤석열은 이를 즉시 재가하였다.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이었다.

김용현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대통령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공관촌 내 국방부장관 공관에 계속 머물렀다. 해당 지역은 대통령 관저뿐 아니라 합동참모의장, 한미연합부사령관, 육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김용현이 경호처장 공관으로 빼앗음) 등의 공관이 위치한 군사보호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러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신속한 강제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우두머리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에 대해 즉각적인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국민적 비판이 거세진 이후인 12월 8일 새벽 김용현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였고,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같은 날 오전 긴급체포하였다.

이 기간 동안 김용현은 충분한 증거인멸의 시간을 확보하였다.

수사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그는 검찰 출석 전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파손하였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였으며,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주요 증거를 인멸하였다.

특히 노트북 파손은 향후 내란의 사전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자정보를 복구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노상원 수첩과 다른 증거 사이의 연결 관계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초기 대응 실패는 단순한 수사 지연의 문제가 아니다. 내란 사건과 같은 국가적 중대범죄에서는 초기 수사가 향후 재판의 증거구조와 양형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증거가 적시에 확보되지 못하면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결국 이번 사례는 내란과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응하는 현행 수사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에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증거보전과 강제수사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과 수사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나. 내란의 본 재판에서의 노상원 수첩 증거력에 관한 오판

이번 내란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다. 이 수첩은 단순히 내란 실행 계획을 메모한 문서를 넘어, 계엄이 성공했을 경우 특정 정치인과 사회 주요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체포·구금하고, 나아가 살해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정황이 담긴 문건으로 평가된다.

현재 수사기관이 확보하여 재판에 제출한 수첩에는 약 **500명**의 개별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특정 정치인과 사회 주요 인사, 시민사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분류와 함께, 정의구현사제단, 민주노총 등 당시 정권에 비판적이라고 인식된 단체들이 집단별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내란이 성공할 경우 최초 체포 대상자 **500명**을 제거한 다음 확대하여 **5,000명**에서 최대 **1만 명** 규모까지 수거 대상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연평도와 오음리 등을 집단 수용시설로 활용하는 계획, 그리고 수용 이후의 사실상 집단학살 계획 방안까지 메모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내란 실행계획을 넘어선 중대한 국가범죄 계획이다.(집단살해 방안 : 서해안에서 폭침으로 수장시키는 방법, **GOP**에서 월북 시도로 위장해 사살시키는 방법 등)

이러한 내용은 특정 개인에 대한 범행 계획을 넘어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반대세력을 조직적으로 제거하려는 계획이다. 따라서 노상원 수첩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을 이용한 대규모 정치적 숙청 또는 조직적 집단살해 계획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또한 현재 확보된 수첩이 과연 최종본인지는 의문이다.

공판 과정에서 공개된 메모의 형태를 보면 문장의 구성이나 필체가 누군가의 지시나 발언을 받아 적은 초안에 가깝다.(이진관 재판부 판결문 참조) 또한 윤석열은 자신의 내란 1심 공판 과정에서(지귀연 재판부) 노상원의 필체를 두고 이른바 '지렁이 글씨'라고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 확보된 수첩은 여러 차례 수정·보완된 문서 가운데 초기 단계의 메모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군인들의 특성상 상관의 구두 지시사항을 수첩에 빠르게 메모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는 채상병 수사외압 증거로 제출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정종범 해병대부사령관에게 수사외압 지시사항 메모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노상원의 수첩의 필기 형태가 조악하고 보관장소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아 내란 준비 시기를 **2024년 12월 1일** 경으로

판단하였고, 사실상 윤석열의 조롱에 가까운 ‘지령이 글씨’라는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

반면 이진관 재판부는 박성제 전 법무부장관 판결에서 필기가 조악한 것은 현장 메모의 특성 때문이고, 집에 보관된 것도 친위쿠데타 성공을 확신해 증거 인멸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라 판단하고 수첩의 증명력을 인정하며 내란 준비 시점을 **2023년**으로 앞당겼다.

"노상원 수첩의 필기가 조악하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필기가 조악한 것은 노상원이 김용현의 발언을 그때그때 현장에서 받아적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있었던 것은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상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사기관이 가까운 시일에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노상원 수첩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거인멸과도 연결된다.

김용현은 검찰 출석 직전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파손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주요 전자정보를 삭제하였다. 만약 해당 전자기기에 노상원 수첩 작성 이전의 회의자료, 초안, 전자문서, 통신기록 등이 존재하였다면 이는 내란의 사전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결국 초기 강제수사가 지연되면서 이러한 증거 확보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는 향후 재판에서 노상원 수첩의 증명력을 보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에도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하였다. 파손된 노트북은 현재 한국 수사기관의 과학수사 장비로는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문서의 증명력은 해당 문서 자체뿐 아니라 작성 경위, 작성 목적, 작성자, 그리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의 상호 연관성을 통해 강화된다. 따라서 전자기록과 통신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자체라기보다 증명력을 보강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상당 부분 상실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복구하기 위한 수사당국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현행 형사법 체계의 한계도 동시에 보여준다.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단순한 내란 실행계획을 넘어 국가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집단살해 계획에 해당 된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이러한 단계의 계획 자체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 규범을 국내법에 수용하고 있으나,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조직적 집단살해를 사전에 기획·음모한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은 충분하지 않다.

반면 미국은 집단학살 음모(**conspiracy to commit genocide**)를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도 집단살해를 계획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국가범죄를 사전에 계획하거나 조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국가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집단살해의 예비·음모·선동행위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특정 사건만을 염두에 둔 입법이 아니라,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조직적으로 침해하려는 국가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다.

다. 특별검사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개선 방향

특별검사제도는 기존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권력형 범죄에 대한 공정한 수사과 기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대부분의 특별검사는 검찰, 경찰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권력형 사건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을 때 입법을 통해 출범하였다.

군인권센터 역시 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별검사 출범과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 추진 과정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특별검사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직접 경험하였다.

첫째, 특별검사 후보군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다.

특별검사는 통상 2~3년 이상 본인의 변호사 업무를 사실상 중단해야 한다. 기존에 맡고 있던 사건은 다른 변호사에게 재배당해야 하고, 상당한 경제적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수사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모두 갖춘 법조인이 특별검사를 맡기를 기피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둘째, 수사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

특별검사는 대규모 수사 조직을 단기간에 구성하고 지휘해야 한다. 그러나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검사나 경찰 간부를 특별검사로 임명할 경우 기존 조직과의 인적 관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대로 수사 경험이 부족한 법조인을 임명하면 대규모 수사조직을 통솔하고 복잡한 권력형 범죄를 지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파견 인력 중심의 조직 구성은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특별검사팀은 대부분 검찰, 경찰, 군검찰, 군사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특별검사의 지휘를 받지만, 파견 종료 후에는 다시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한다. 이러한 인사구조에서는 향후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 내부의 평가를 의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채상병 사건에서도 경찰과 군사경찰이 확보한 수사 결과를 두고 파견 검사와 군검사가 조직적으로 저항하며 기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면서 기소 범위에 상당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특별검사 개인의 의지와 별개로 파견 중심 조직이 갖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넷째, 특별검사는 언제나 '사건 이후'에 출범한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권력형 범죄는 대부분 사건 발생 후 수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이 지난 뒤 특별검사법이 제정된다. 그 사이 핵심 증거는 이미 인멸되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변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번 내란 사건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기 강제수사를 받지 않은 사이 주요 전자기기를 폐기하고 통신기록을 삭제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다섯째, 제한된 수사기간 역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만든다.

현행 특별검사제도는 일정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를 제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내란과 같이 방대한 조직과 다수의 피의자, 군과 정보기관까지 포함된 사건에서는 수개월의 수사만으로 실체적 진실을 모두 규명하기 어렵다. 결국 시간 부족으로 인해 일부 범죄사실만 기소하거나 추가 수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3대 특검과 종합특검으로 이어지는 특검의 문제점

3대 특검과 종합특검 간 수사기록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3대 특검 입장에서는 종합특검이 추가 기소할 경우 부실수사 또는 부실기소라는 비난을 의식해 의식하면서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기보다 각 특별검사가 개별 성과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별검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Archibald Cox)는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백악관 녹음테이프 제출을 요구하였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콕스를 해임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른바 '토요일 밤의 학살(Saturday Night Massacre)'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에 잇달아 사임하고, 사법부와 의회, 언론이 강력하게 견제하면서 특별검사의 독립성은 오히려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워터게이트 재판을 담당한 존 시리카(John J. Sirica)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권력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특별검사의 제도적 기반은 이후 미국의 독립검사 제도 발전으로 이어졌다.

우리 역시 특정 개인의 의지에 의존하는 특별검사가 아니라, 정치권력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임기와 수사기간을 단순히 기계적으로 입법하지 않아야 한다. 특검 임명 직후 특별검사보 임명과 파견 요청 예산 확보와 시설 확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장애 요소들을 해결 할 수 있는 입법이 보완 되어야 할 것이다. 독립적인 수사인력과 수사관을 상설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모든 수사기관이 범죄에 연루된 사건이 바로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사건이고, 윤석열의 격노로 경찰, 국수본, 검찰, 공수처, 군사경찰, 군검찰 방첩사가 줄줄이 불법에 가담했다. 국가 공권력이 순기능을 하면 필요 없는 논의 라고 치부 할 수 없다.

결국 내란과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한 번의 특별검사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장기간의 독립적 수사과 기소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권력형 국가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사법개혁 과제라고 생각한다.

Ⅲ. 내란 재판 과정에서 도출된 교훈

가. 내란전담법원 설치의 필요성

내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내란은 단순히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아니라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헌법기관의 권능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범죄이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 역시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번 12·3 내란 사건 역시 이러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수사 초기의 증거인멸, 다수의 군과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연루된 복합적인 범죄구조, 방대한 증거기록,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공판은 기존 형사사법체계만으로는 실체적 진실을 충분히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2025년 4월 「12·3 내란 청산을 위한 5대 대선과제」를 발표하며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독립적인 특별검사제도 운영 ▲특별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각각 별개의 장치가 아니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역사적 기록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내란특별조사위원회는 형사처벌만으로는 규명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국가기관의 의사결정 과정과 제도적 실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형사재판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이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헌정질서가 어떻게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역사적·제도적 진실을 기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으로 특별검사는 정치권력과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권력형 범죄는 기존 수사기관의 이해관계와 조직논리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므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특별검사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특별재판부는 장기간의 집중심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사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수의 피고인과 방대한 증거,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이 함께 다루어지는 사건에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재판 운영만으로는 효율적이고 일관된 심리가 쉽지 않다. 특별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예외 법원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하여 특정 유형의 중대 헌정질서 침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판체계를 의미한다. 이미 법원조직법에는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같은 특수법원들이 있어 내란특별법원 설립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지귀연 재판장과 영장전담판사들이 내란법을 일반 형사범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3 불법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법수호를 하지 않고 계엄사령부에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권이 이관하려는 입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되었다. 하지만 조은석 내란특검은 조희대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사실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기초수사도 하지 않아 사실상 공은 종합특검으로 넘어갔으나 종합특검도 이부분을 강제수사 할지는 미지수다.

해외 사례도 이러한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 대통령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사법원칙을 확립하였다. 독립적인 특별검사의 수사와 연방법원의 엄정한 재판은 권력형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독일은 나치 체제의 붕괴 이후 전범 처벌과 민주주의 회복을 병행하면서,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헌법을 적극적으로 수호하는 이른바 '방어적 민주주의(Wehrhafte Demokratie)'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민주적 통제 장치를 제도화함으로써 권위주의 체제의 재등장을 예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사 결과와 재판 기록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공식 백서를 작성·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헌법교육과 공직자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내란의 진상을 기록하고 교훈을 제도화하는 것 역시 민주공화국이 헌법을 수호하는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나.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

12.3 내란 사건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히 국군정보사령부가 보유한 인적 정보와 특수임무 수행체계가 민주적 통제 없이 운영될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조직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드러냈다.

국군정보사령부 전 사령관 문상호와 김봉규·정성욱 대령은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재판 과정에서는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사항과 보직, 담당 임무, 조직 운영 관련 정보 등이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들 정보에는 특수임무 수행요원(HID) 관련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군사기밀은 단순히 비밀문서가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과 장병의 생명, 정보자산의 보호를 위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특히 정보사 요원의 신원과 임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대북 정보활동은 물론 해당 요원과 가족의 안전까지 심각한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군사기밀 유출은 단순한 보안사고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로 평가되어야 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정보가 단순히 외부에 유출된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개된 수사기록과 국회 증언 등을 종합하면 노상원이 작성한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사회 각계 인사를 체포·구금하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었고, 정보사 예하 조직과 특수임무 수행체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 정황이 드러났다. 사실이라면 이는 군 정보기관이 본래의 임무를 벗어나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헌법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작전에 동원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재직 당시 부하들에게 폭탄을 이용한 극단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의 진위는 사법절차를 통해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군 정보기관 내부의 지휘체계와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독립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 정보사 관련 재판은 상당 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안보와 군사기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건 전반이 국민의 검증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향후에는 비공개 심리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재판 종료 이후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판결의 주요 내용과 사실관계, 제도 개선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공개재판의 원칙과 국가안보 보호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정보사의 조직과 예산, 활동은 국민이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회의 민주적 통제 또한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필요한 비밀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정보기관이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독일은 나치 시대의 게슈타포와 집단학살 경험을 반성하며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권한을 엄격히 분리하고, 의회와 독립기관인 헌법수호청과 국방옴부즈만을 통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였다. 우리 역시 이번 내란 사건을 계기로 군 정보기관의 권한과 기능, 예산, 국내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정보기관이 다시는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번 내란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제도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Ⅳ. 12·3 내란 재발방지를 위한 8대 입법·제도 개선 과제

12·3 내란은 단순히 일부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내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제도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첫째, 「12·3 내란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이지만, 국가적 위기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란의 기획과 실행 과정, 국가기관의 대응, 제도적 실패 원인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국가 차원의 공식 백서로 발간하여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12·3 내란은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정부는 일회성 TF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란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헌법교육, 공직자 교육, 군 간부 교육, 국가위기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상설 정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과거 국무총리실 헌법준중총괄TF가 헌법 가치 확산과 제도 개선을 추진했던 경험을 계승·발전시키는 의미도 가진다. 다만 내란특별조사위원회는 행정부 소속 자문기구가 아니라, 국회가 설치하는 독립적 조사기구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조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둘째, 특별검사의 실질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특별검사는 권력형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핵심 제도이다. 특별검사의 임기와 수사기간을 국회의 의결을 통해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적인 수사인력과 수사관을 확보하여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법원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내란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다수의 피고인, 방대한 증거,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함께 다루어지는 복합 사건이다. 전문성과 집중심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법원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국군정보사령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군 정보기관이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경우 국가안보를 위한 조직이 오히려 헌법질서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보사의 권한과 예산, 국내 활동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재판 종료 이후에는 국가안보에 실질적인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집단살해의 예비·음모·선동행위에 대한 처벌체계를 신속대응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노상원 수첩은 현행 형사법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국가범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제형사법과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국가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집단살해를 사전에 기획·음모·선동하는 행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방어적 민주주의에 기초한 헌법수호청 신설 해야 한다.

독일은 나치 체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질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 역시 헌법질서를 폭력적으로 부정하거나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헌법수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일곱째, 군의 불법명령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불법명령처벌죄와 불법명령거부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군인이 위헌·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여덟째, 독일식 국방옴부즈만(국방감독관) 도입을 통해 군에 대한 강력한 문민통제해야한다.

독일식 국방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첩 기능과 정보 기능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군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감시기관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독일 국방옴부즈만 불시부대방문권, 모든 군사기밀 접근권한을 갖고 있다.

V. 맺음말

민주주의는 한 번의 선거나 한 번의 재판만으로 지켜지는 제도가 아니다.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독립적인 수사와 재판,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지속적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민주헌정질서는 유지될 수 있다.

12·3 내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헌법과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제도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적 진상규명과 역사적 기록, 독립적인 수사와 공정한 재판, 그리고 실효성 있는 헌법수호청과 국방옴부즈만(국방감독관) 입법과 제도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같은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전쟁책동, 군을 동원한 계엄을 막기 위해, 일반이적죄 확실한 단죄가 필요하다

내란특검 및 재판의 성과와 남은 일반이적죄 의혹을 중심으로

주제준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간사

1. 12.3 내란 사태 이후 1년 7개월의 기록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그동안 자신의 권력욕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주권자인 시민의 평화로운 일상과 민주주의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윤석열 일당의 폭거를 온 힘을 다해 막아냈다. 주권자 시민들의 단호한 저항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켰고, 새로운 선거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는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일구어냈다. 나아가 그들이 범한 무도한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출범시켰으며, 다소 늦었지만 내란전담재판부까지 구성하여 법적 심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2. 내란 종식을 향한 여정의 현주소

- 그러나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는 냉정하게 자문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켰는가, 아니면 종식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들이 감행한 내란과 외환 행위의 전모에 완벽히 다가서고 있는지, 내란에 부화뇌동하며 핵심 임무를 담당했던 자들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찾아내 단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발각되지 않은 채 숨어 있는 상당수의 반동 세력들이 다시금 전복의 기회를 엿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을 확인한 채 설부른 승리감에 도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한다.

3. 완전한 내란 종식의 의미

- 진보민중·시민사회는 내란이 발발한 직후부터 줄곧 '완전한 내란 종식'을 외쳐왔다.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개혁이 공백 없이 이행될 때 비로소 내란은 종식된다. 이는 우리 역사가 피로 써 내려간 교훈이기도 하다. 과거의 불완전한 청산이 어떻게 반민주적 독재의 불씨로 되살아났는지를 기억하기에, 이번만큼은 단 하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 토론문에서는 박용대 단장과 유승익 소장의 발제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내란 수사 및 재판의 성과를 평가하고, 일반이적죄 재판 등에서 드러난 심각한 사법적·행정적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4. 내란 수사 현황 및 특검 성과 요약

- 박용대 발제자가 정리한 바와 같이, 1차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출범하기 전까지의 초기 수사는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의 합작체인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와 검찰의 '12.3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로 이원화되어 진행되었다. 이 시기 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구속했고,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첫 내란 혐의 기소를 기록했다. 이후 박안수, 여인형, 그리고 최종적으로 윤석열을 구속기소하며 군·경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물꼬를 텃다.

5.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태와 검찰의 직무유기

-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원은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한과 관련해 법상의 '날(日)'이라는 규정을 '시간'으로 독단적으로 해석하여, 기존의 사법 관행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해괴한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했다. 더욱 분노스러운 점은 법원의 이러한 위법적인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소추기관인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내란 수괴가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이는 사법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에게 깊은 절망과 분노를 안겼다.

6. 1차 특검의 본격 출범과 가시적 성과

- 2025년 6월 12일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되면서 수사는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1차 특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법원의 독단적 결정으로 석방되었던 윤석열을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석방된 지 124일 만의 일이었다. 특검은 조은석 특검을 필두로 6명의 특검보, 그리고 검찰, 공수처, 경찰, 국방부, 감사원 등에서 파견된 182명의 정예 인력과 추가 채용된 특별수사관 등 총 238명 규모로 매머드급 수사팀을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이 중 215건을 철저히 수사·처리하는 밀도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7. 주요 피고인별 기소 내역 분석

- 특검과 검찰의 공소제기 내역을 살펴보면 내란 범죄의 핵심 주동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음을 알 수 있다. 윤석열은 내란수괴,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의 혐의로 다중 기소되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수괴방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으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증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군부 세력뿐만 아니라 내란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고위 관료 사회의 핵심 인물들까지 사법 단죄의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8. 일반이적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의 사유화

- 그러나 이러한 성과 뒤에는 매우 어둡고 심각한 사법적 퇴행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윤석열 등 핵심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일반이적죄' 재판 과정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불투명하고 폐쇄적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폭로된 바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재판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며 방청객과 취재진의 접근을 전면 차단했다. 국가 안보와 기밀 유지를 핑계로 내세웠으나, 이는 실상 내란 범죄자들의 추악한 범행 과정을 은폐하고 국민적 감시의 눈을 돌리려 한 '사법의 사유화'이자 '밀실 재판'에 불과하다.

9. 헌법상 공개재판 원칙의 전면적 위배

- 우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심리만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일반이적죄 재판부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안보상의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심리 전 과정을 전면 비공개로 부쳤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을 넘어, 헌법이 규정한 재판공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사법권 남용이다.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려 한 죄를 심판하는 재판이 공화국의 주인인 국민들 몰래 치러진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10. 일반이적죄에서 드러난 분단 구조와 군의 정권 유지 도구로서 개입의 취약성

- 윤석열 정권이 12.3 계엄 이전부터 군사적 도발을 통해 국지적 전쟁 상황을 이용하여 계엄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다시 설치한 대북 확산기와 오물풍선, 이를 원점타격하러던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 휴전선 인근을 고고도 비행하며, 북의 공격을 유도한 아파치 헬기 사건, 무인기를 이용한 수차례 도발과 빼라 살포 등 하나하나가 분단 구조 속 정권이 마음 먹으면 계엄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음을 12.3 계엄에서 우리는 경험했다. 또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 국정원이 작당모의하여 계엄을 준비한다면, 정보사령부와 2사단, 특전여단, 드론사령부 등 군을 동원하여 충분히 군을 동원한 계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드론의 경우, 휴전선을 넘어 날아간 드론의 항적을 주한미군이 파악하지 못했을 리 없는 상황에서, 특검의 정당한 한미연합사 수사는 올바른 처사였으나, 주한미군은 이에 대해 한국측 외교부 등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우리 땅에서 전쟁을 벌이려 했던 처사는 무엇이든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 과정에 정권의 지시와 군의 행동을 철저히 조사하고 일벌백계 하여야만 다시는 군을 동원한 계엄을 시도하지 못할 것이다.

11. 주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외환죄(일반이적죄 정황)

1) 국군심리전단 및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의혹

- 2023년 10월 중순 ~ 2024년 11월: 국군심리전단의 조직적인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2개월마다 지속된 작전의 실체 및 지휘 계통 규명 필요.
- 2023년 10월 12일: 제34차 NSC 상임위에서 결정된 대북전단 재개 과정과 신원식 당시 장관 등의 구두 지시 하달 경로 의혹.
- 2024년 5월 ~ 11월: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묵인 및 방조하며 군사적 긴장을 유도했는지 여부.

2) 평양 및 접경지역 무인기(드론) 침투 및 은폐 공작 의혹

- 2024년 5월 말 ~ 6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주도로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개조 및 '전투실험계획'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경위.
- 2024년 10월 2일 ~ 10일: 총 3차례에 걸친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작전의 승인권자(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용현)와 실제 전단 살포 목적.
- 2024년 10월 12일: 연천에 추락한 아군 무인기를 은폐하기 위해 군 훈련 일지를 조작하고, 경찰에 보안 유지를 요청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
- 2024년 10월 ~ 11월: 총 18대의 무인기를 북한 주요 지역에 침투시키며 북한 무인기 복제품까지 준비해 사실관계를 기만하려 한 정황.

3) 대남 오물풍선 발미의 '원점타격' 국지전 유도 및 군사 도발 의혹

- 2024년 7월 ~ 10월: 서해 NLL 일대에서 아파치 헬기와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북측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고의적인 위협 비행 및 도발을 감행한 의혹.
- 2024년 9월 ~ 11월: 오물풍선 부양 원점을 타격하는 작전계획 수립 지시, 지상작전사령관 사격 반대에 대한 질책, 그리고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작전본부장에게 독단적 보고를 지시한 국지전 유도 혐의.
- 2024년 11월 18일: 최전방 부대에 대공포 고각발사 조준을 지시하는 등 사실상의 전투 개시 상태를 유도하려 한 정황.

4) 비상계엄 선포 연계 및 군령 조작 의혹 (북풍공작)

- 2024년 10월 ~ 11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를 통해 드러난 포고령 위반자 최우선 검거 계획, 야당 정치인 및 언론인 타깃팅 리스트 작성 경위.
- 2024년 11월 5일: '자위사령관(지작·특전·수방·방첩사령관)' 회합을 통한 계엄 반대 인물(강호필) 배제 및 군 내부 리더십 조기 장악 모의 의혹.
- 2024년 12월 1일 ~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707특임대 등에 "북한 상황 심각, 실출동 준비"라는 허위 메시지를 하달하여 군인들이 국회가 아닌 북측 지역 작전으로 오인하게 만든 기만 공작.
- 2024년 12월 8일 ~ 종순: 계엄 실패 이후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의 컨테이너 화재 및 문서세단기를 동원한 고의적인 무인기 관련 자료 삭제(증거인멸) 의혹.

12. 결론: 일반이적죄로 단죄하지 못한다면, 내란외환 청산은 반쪽이 될 우려가 매우 크다.

-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계엄 문건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찌감치 미국으로 도망하였고, 윤석열 정권시기 돌아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때 역할을 했던 자들이 그대로 살아남아 이번 윤석열 계엄의 중추가 되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다시금 반복된다는 역사의 진리가 2016년에서 2025년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명백히 확인한 것이다.
- 이번 기회에 일반이적죄, 외환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87년 민주화 이후 세번째 계엄을 맞이할 수 있다. 첫번째 계엄은 미수에 그쳤고, 두번째 계엄은 시도했으나 주권자 시민의 힘으로 막아냈다. 그러나 세번째 계엄을 저들이 똑같이 시도할 리 없고, 우리가 온전히 막아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일반이적, 전쟁책동 전 과정을 명명백백히 드러내야 한다.

토론회자료집

내란종식, 어디까지 왔나?

사법·입법·행정부의 대응 및 평가, 향후과제

발행일 2026. 7. 9.

발행처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당

김태일 참여연대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최세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상근변호사

(070-5176-8163, sychoi@minbyun.or.kr)

※ 본 자료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